

[별표 5]

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

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	산 정 기 준
1년이상 5년 이내인자	퇴직당시 평균임금(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)의 50% × 정년잔여월수
5년초과 10년 이내인자	퇴직당시 평균임금(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)의 50% × {60 + (정년잔여월수 - 60)/2}
10년초과인자	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(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.)